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2024. 2.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06호로 2024년 2월 8일 이예찬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 증진, 고용촉진, 여가 문화생활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계획 수립(안 제4조 ~ 제5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6조 ~ 제7조)
- 라. 사무의 위탁 및 준용(안 제8조 ~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4. 2. 16. ~ 2. 2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고용촉진, 여가 문화생활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제5호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 노인·기타 저소득 노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 및 부식구입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준용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6%를 넘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며,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 또한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노인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영등포구 고령인구비율					
※출처: 통계청 자료(단위: %)					
지 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국	15.5	16.4	17.1	18.0	19.0
서 울	15.2	16.1	16.8	17.6	18.5
영등포구	15.5	16.0	16.3	16.9	17.6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구청장 등의 책무 신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